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람	기관의장

공보

제697호 2021. 7. 26.(월)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107호 도로명주소 고시 ····· 1

남해군 고시 제2021-108호 노도 하수처리구역 지형도면 고시 ····· 4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986호 남해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5

남해군 공고 제2021-988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 18

남해군 공고 제2021-996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 20

남해군 공고 제2021-997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 22

남해군 공고 제2021-998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 24

남해군 공고 제2021-999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 26

남해군 공고 제2021-1015호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28

남해군 공고 제2021-1027호 『동천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43

남해군 공고 제2021-1028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 45

남해군 공고 제2021-1037호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 47

회 람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성과담당관(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 - 10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951-136 외 1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도 열 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5)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7.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주소(부여, 변경, 폐지) 고시 조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련번호	도로명부여사유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1127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951-136	14011	남해군의 중심도로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1487-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질개로177번길 49-7	14012	질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374-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삼이로 22-9	14014	동쪽의 두, 세번째 행정구역이라는 뜻으로 지어 부른 방위지명인 이동면과 삼동면을 연결하는 도로임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845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796번길 54	14015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9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772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창남로72번길 50	14031	창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6-168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122번길 132-27	14032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중현리 76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화방로349번길 51-10	14033	화방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호리 164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스포츠로542번길 35-141	14034	스포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276-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강진만로 144-9	14035	남해본섬과 창선도 사이에 자리한 강진만과 접한 해안도로임을 반영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64-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로 329-31	14036	행정리를 이용. 마을주변에 버드나무 꽃(양화)이 피어 있고, 금자가 들어가는 다섯 군데의 산이 있다하여 유래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48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 18	14051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남해스포츠파크로 향하는 길임을 반영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산11-3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2264번길 87	14052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6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치리 715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치로177번길 15-30	14053	남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78번길 14-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78번길 12-1	14054	화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598-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33	14071	행정구역명을 이용. 배를 만들던 곳, 신선들이 사는 땅을 의미함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935-10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성남로 9	14091	현재는 폐교이나 인근 마을의 유일한 초등학교인 성남초등학교가 위치했던 길이었음을 반영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1300-2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질개로 63-35	14112	도산의 순우리말로 질그릇을 만들었던 곳을 의미함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88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596-9	14114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2021년 7월 26일 남해군보 제 697 호 (3)

남해군 고시 제2021-108호

노도 하수처리구역 지형도면 고시

남해군 상주면 노도 일원에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하수처리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21.

남 해 군 수

1. 하수처리구역 결정조서

연번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1	노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968-3 일원	0.04㎢	

2. 하수처리구역 결정 사유서

구역명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노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968-3 일원	신설	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에 따름

3. 하수처리구역 지형도면 : 실음생략

○ 하수처리구역도 공람장소 : 남해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55-860-8624)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745, 남해유배문학관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 - 986호

남해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2. 개정이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2021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개정 사항과 2차 피해 방지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지침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침 제명 변경

- 「남해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남해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나.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 내용을 신설하고 정비함(안 전체)

다. 군수, 상급자, 구성원 책무를 신설하고 정비함(안 제4조～제6조)
- 부서별 책무를 분장하여 추진(성희롱·성폭력, 감사, 인사담당 부서)

라. 사이버신고센터 운영내용 신설함(안 제8조)

마. 외부전문가 조사 및 고충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함 신설(안 제13～19조)

바. 피해자에 대한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대책 결과 제출 신설(안 제21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1년 7월 28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847, 팩스 055-860-3882, 이메일 did0426@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여성보육팀(전화 055-860-38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훈령 제 호

남해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남해군수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 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 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 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남해군 소속 구성원(남해군수와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되며, 남해군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실태,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 군수는 제1항의 책무를 관련 부서별로 분장하여 책임있게 추진한다.

1. 성희롱·성폭력 업무부서장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설치 · 운영, 연간 기본계획 수립,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 라 한다) 설치·운영
2. 감사업무부서장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로 결정된 사안의 가해자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
3. 인사업무부서장 : 성희롱 · 성폭력 및 2차 피해 가해자 징계조치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 라 한다)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이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 처리와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 상담·처리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담당부서에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군수는 고충상담창구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공무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처리를 위한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밖에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과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사이버신고센터) ①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군수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7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매년 초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 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직원(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업무 부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거나 남해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1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⑥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제14조제2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⑦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가 신청하면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⑨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부 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군수(인사 ·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 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군수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성희롱 ·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성희롱·성폭력 업무부서장, 감사업무부서장, 인사업무부서장에 재직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 중 3명은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희롱·성폭력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회피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 등 결과통지) 군수는 당사자에게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①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군수는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군수는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②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희롱 · 성폭력 행위자와 2차 행위자에 대해 재발방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상담원	과장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조사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 청 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 리 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 **위 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조사 신청 취지	*※ 6하 원칙에 따라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자세하게 기록*				
요구사항	1.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 ) 2. 공개 사과 ( ) 3. 징계 등 인사조치 ( ) 4. 기 타 ( )				

위 신청인은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조사결과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사건 당사자 통보용)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조사 결과

- 조사 내용 중 주요 사항 및 조사 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3.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성희롱·성폭력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공고 제2021 - 988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 업 권 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573호	패류양식 (살포식)	새꼬막	창선 광천	50,000	2021.07.09 2031.07.08	부산 수영구 감포로100, 1004호	오세훈	제173호 재개발

※ '21/22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 양식어업권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 업 권 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173호	패류양식 (살포식)	새꼬막	창선 광천	50,000	2011.07.09 2021.07.08 (10년)	부산 수영구 감포로100, 1004호	오세훈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513호

축 척 : 1/25,000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마) N34-51-40.58, E127-57-47.75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²

	경 위 도 (WGS)			
	위 도	경 도	거 리	
가	34-51-22.361	127-56-53.837	가-나	200
나	34-51-15.872	127-56-53.836	나-다	250
다	34-51-15.872	127-56-43.996	다-라	200
라	34-51-22.361	127-56-43.996	라-가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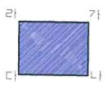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CO
TEL. (055)863-1353

남해군 공고 제2021 - 996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 업 권 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574호	패류양식 (투석식)	전복	서면 남상	20,000	2021.07.13 2031.07.12	남해군 서면 남상	남상어촌계	제174호 재개발

※ '21/22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 양식어업권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 업 권 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174호	패류양식 (투석식)	전복	서면 남상	20,000	2011.07.13 2021.07.12 (10년)	남해군 서면 남상	남상어촌계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574호

축 척 : 1/25,000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투석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상리 남상지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마) N34-51-04.77, E127-48-32.88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20,000 m²

경 위 도 (WGS)				
	위 도	경 도	거 리	
가	34-50-54.816	127-48-38.139	가-나	100
나	34-50-56.509	127-48-41.497	나-다	200
다	34-50-50.973	127-48-45.605	다-라	100
라	34-50-49.280	127-48-42.248	라-가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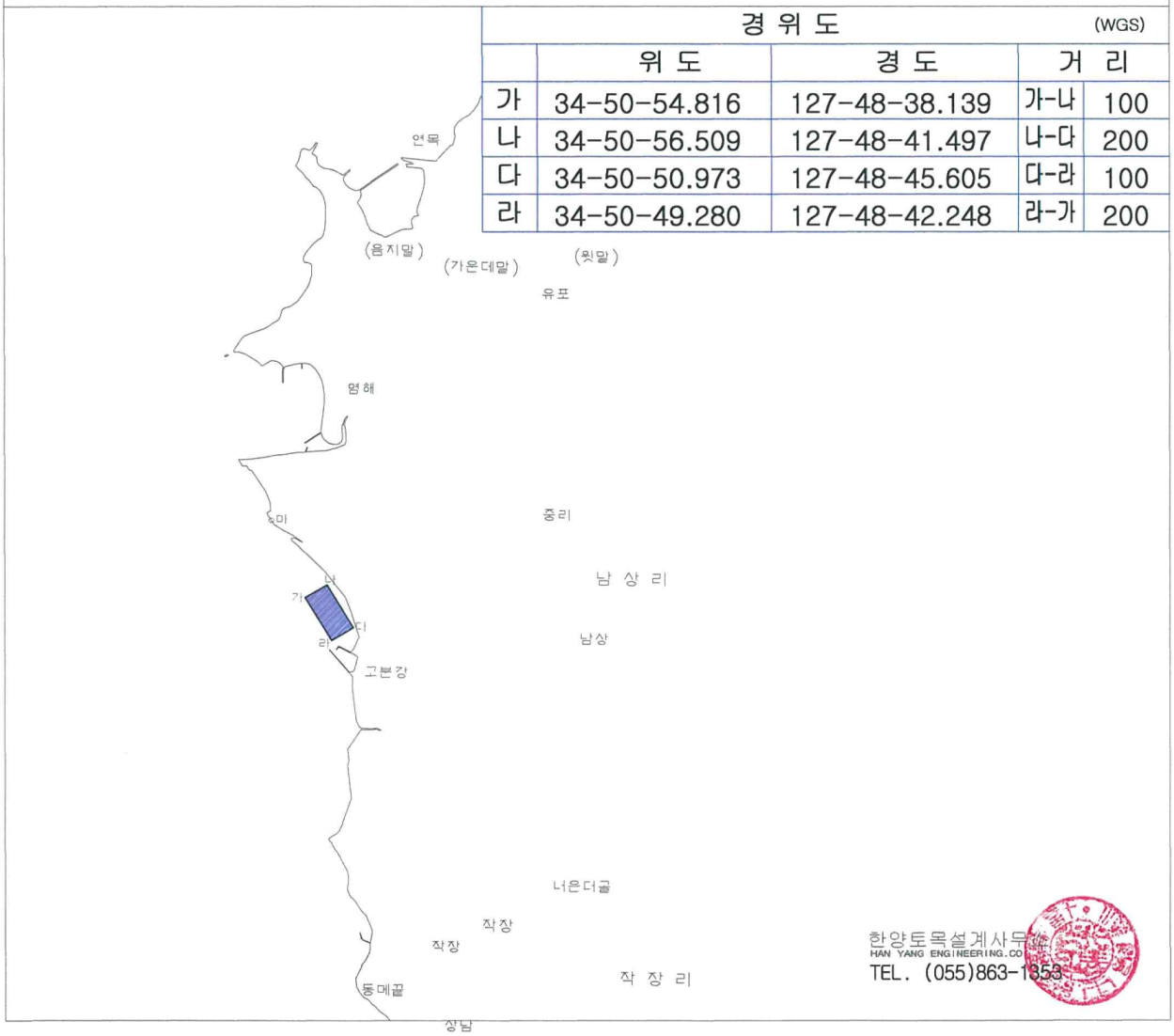

남해군 공고 제2021 - 997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 업 권 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575호	패류양식 (투석식)	전복	남면 홍현	50,000	2021.07.13 2031.07.12 (10년)	남해군 남면 홍현	홍현어촌계	제175호 재개발

※ '21/22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 양식어업권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 업 권 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175호	패류양식 (투석식)	전복	남면 홍현	50,000	2011.07.13 2021.07.12 (10년)	남해군 남면 홍현	홍현어촌계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575호

축 척 : 1/25,000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투석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홍현리 홍현지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마) N34-45-16.008, E127-54-17.980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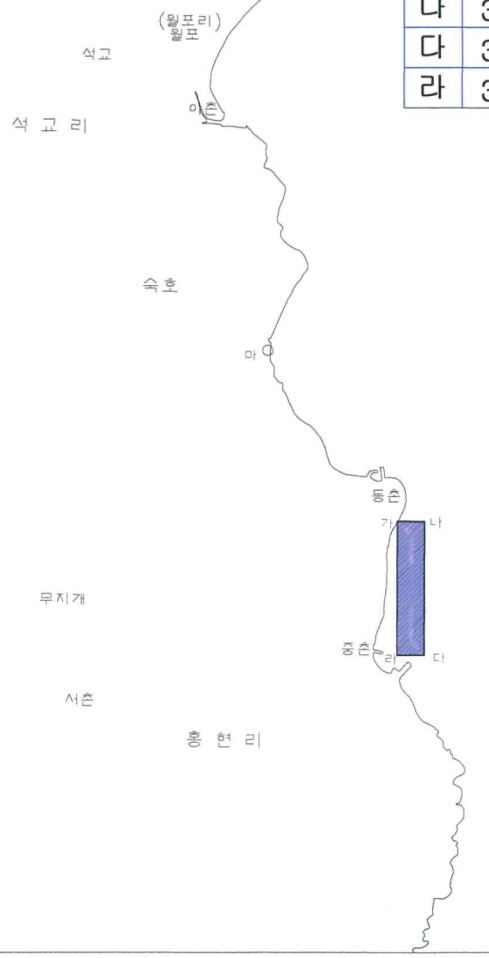

경 위 도 (WGS)				
	위 도	경 도	거 리	
가	34-44-55.543	127-54-36.775	가-나	100
나	34-44-55.566	127-54-40.706	나-다	500
다	34-44-39.342	127-54-40.842	다-라	100
라	34-44-39.320	127-54-36.911	라-가	500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CO
TEL. (055)863-1353

남해군 공고 제2021 - 998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 업 권 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576호	패류양식 (투석식)	전복	남면 가천	20,000	2021.07.13 2031.07.12 (10년)	남해군 남면 홍현리	가천어촌계	제176호 재개발

※ '21/22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 양식어업권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 업 권 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176호	패류양식 (투석식)	전복	남면 가천	20,000	2011.07.13 2021.07.12 (10년)	남해군 남면 홍현리	가천어촌계	

경남 남해양식 어업면허 제 00176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5176

축척 : 1/25,000

1. 어업의 종류 : 패류양식 (전복)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바닥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홍현리 가천 (산316) 지선
4. 수면의 구역 : 아래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5. 어장의 면적 : 20,000m^2(2ha)

구획점	직각좌표		경위도						점간거리	
	X(N)	Y(E)	위도			위도			구간	거리
가	236,806.296	281,704.373	34°	43′	25.362″	127°	53′	31.255″	가-나	200.0
나	236,870.756	281,893.703	34°	43′	27.399″	127°	53′	38.718″	나-다	100.0
다	236,776.089	281,925.944	34°	43′	24.318″	127°	53′	39.952″	다-라	200.0
라	236,711.628	281,736.613	34°	43′	22.281″	127°	53′	32.489″	라-가	100.0

o 보조기점을 사용

남 해 토 목 설 계 사 무 소
LS NAMHAE CIVIL ENGINEERING 055-862-[illegible]78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김 정 겸

257mm × 364mm(인쇄용지(2급) 60g/m)

남해군 공고 제2021 - 999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 업 권 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577호	패류양식 (살포식)	바지락	남면 가천	30,000	2021.07.13 2031.07.12 (10년)	남해군 남면 덕월	구미어촌계	제177호 재개발

※ '21/22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 양식어업권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 업 권 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177호	패류양식 (살포식)	바지락	남면 가천	30,000	2011.07.13 2021.07.12 (10년)	남해군 남면 덕월	구미어촌계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5개호

축 척 : 1 / 25,000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덕월리 구미지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바) N34-46-42.43, E127-50-53.41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30,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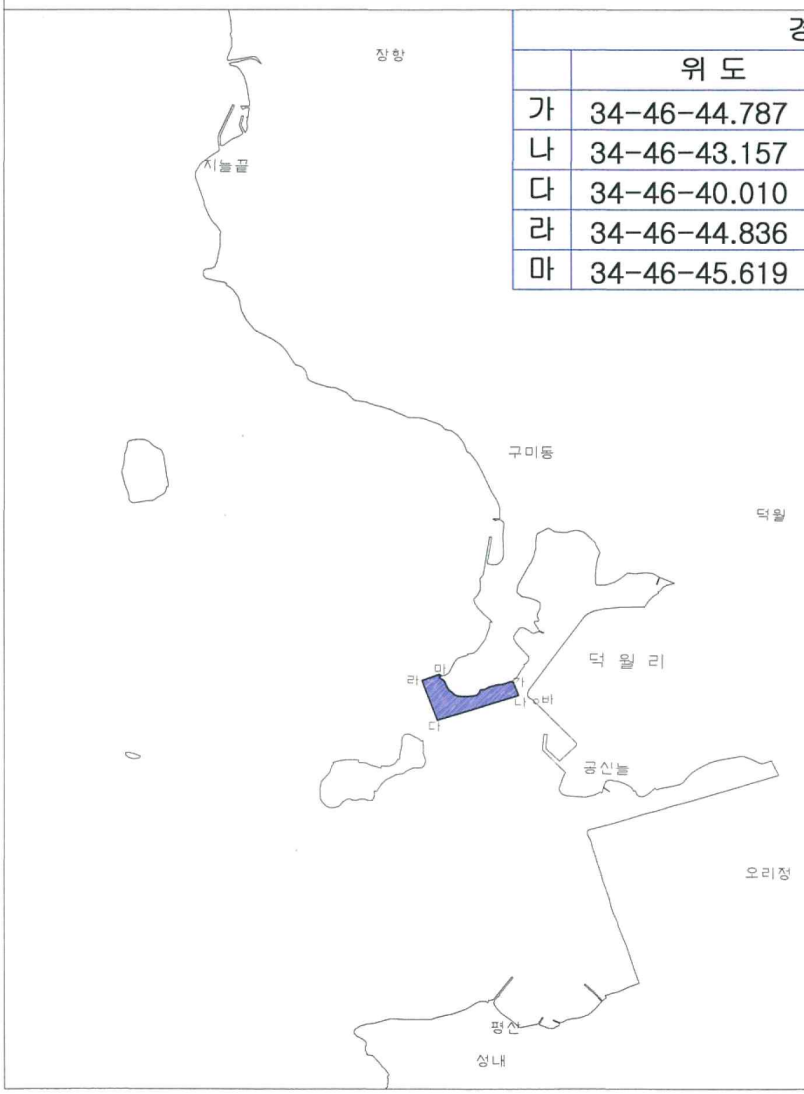

경 위 도 (WGS)

	위 도	경 도	거 리	
가	34-46-44.787	127-50-50.186	가-나	54
나	34-46-43.157	127-50-50.945	나-다	310
다	34-46-40.010	127-50-39.381	다-라	159
라	34-46-44.836	127-50-37.151	라-마	66
마	34-46-45.619	127-50-39.557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CO
TEL. (055)863-1353

남해군 공고 제2021-1015호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

2. 제정이유

남해군 소재 작은 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거주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 조례 제정 목적
나. 안 제2조 : 정의(작은 학교, 임대주택, 부대시설)
다. 안 제4조 : 군수의 책무
라. 안 제7조 ~ 제13조 :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등
마. 안 제14조 ~ 제21조 : 협의회의 설치 등
바. 안 제22조 : 관리위탁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21년 8월 10일까지 (20일간)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청년혁신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8642, 팩스 055-860-3750
3) 메 일 : suk7406@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메일, 직접 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청년혁신과 교육청소년팀(860-86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의 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거주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 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남해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학교”란 남해군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 학생의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2. “임대주택”이란 남해군수가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임대주택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하 “작은학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해야 한다.

1. 작은 학교에 학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과 자원을 적극 활용할 것
2.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관계 행정기관·군 소재 각급 학교·관계 전문가·민간단체 등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할 것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작은학교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작은학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임대주택 입주자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작은학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작은학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매년 남해군 작은학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은학교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작은 학교 현황 및 발생추이
3. 작은학교사업의 추진 및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남해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작은 학교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작은학교사업 등) ① 군수가 추진하는 작은학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 조성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실정과 주택 수요의 적합성
2.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과 환경
3. 임대주택 운영의 지속성
4. 군민의 인식 및 협조

제7조(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세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세대가 군으로 전입하고 해당 자녀가 작은 학교로 전학하는 세대로 한다.

제8조(입주 신청 및 입주자 선정) ①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입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주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입주자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해당 입주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주 신청, 입주자 선정 및 입주자 선정 통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임대차계약 체결 등) ①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군수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마다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임대료 등) 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 등을 감액할 수 있다.

1.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자녀가 2명 이하인 세대: 100분의 50
2.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100분의 65

③ 그 밖의 임대료 등의 부과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입주자의 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행위
2. 임대주택과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그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4. 그 밖에 임대주택과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①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계약 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소멸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입주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임대차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군수는 입주자가 퇴거하는 경우 임대료 등을 반환한다. 다만, 군수가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13조(입주자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입주자의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임대주택 입주자격이나 입주자 선정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입주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작은학교사업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작은학교사업의 추진 관련 심의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남해군 작은학교사업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작은학교사업 추진 및 지원
3. 실무협의회의 운영
4. 작은학교사업 관계기관 및 작은 학교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심의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작은학교사업 담당 부서장
2.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행정기관, 학교, 민간단체 구성원으로서 작은학교사업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작은학교사업 관련 전문가
4. 작은 학교가 소재하는 읍 또는 면에 거주하는 군민
5.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등) ① 작은학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실무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간사 등)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고, 간사는 작은 학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2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현 주 소				
연 락 처				
가구원수	명 ※초등학생 : 명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확인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지, 연락처, 가족관계, 재산세 납입 증명서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입주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표준임대차 계약서

아래 표시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대인 남해군수와 임차인 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가. 임대인

1) 이름: 남해군수 (인)
2) 주소:
3) 사업자등록번호:

나. 임차인

1) 이름: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년 월 일

3. 공공임대주택의 표시

<table>
<tr><td>주택 소재지</td><td colspan="6"></td></tr>
<tr><td>주 택 유 형</td><td colspan="6">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그 밖의 주택[ ]</td></tr>
<tr><td rowspan="3">공공임대주택
면 적</td><td rowspan="2">방의 수</td><td rowspan="2">규모별</td><td colspan="4">면 적(㎡)</td></tr>
<tr><td rowspan="2">전용면적</td><td colspan="2">공 용 면 적</td><td rowspan="2">합계</td></tr>
<tr><td>주거공용 면 적</td><td>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공공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종류</td><td colspan="6"></td></tr>
<tr><td>담 보 물 권 설 정 여 부</td><td colspan="3">없음[ ]</td><td colspan="3">있음[ ]
-담보물권의 종류:`
-설정금액:
-설정일자:</td></tr>
<tr><td>임차인 자격</td><td colspan="6"></td></tr>
</table>

※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4. 계약조건

제1조(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인"은 위 표시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한다.

구 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금 액		
임대차 계약기간		

② "임차인"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급
중도금	금	원정은 . .에 지급
잔 금	금	원정은 . .이전에 지급

③ "임차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임대인"에게 예치해야 하며, 제2항의 지급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임차인"은 그달 분 임대료를 임대인이 지정한 기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임대주택의 입주일은 . . .부터 . . .까지로 한다.

제3조(월 임대료의 계산) ① 월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않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월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한다.

② 입주 월의 월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제4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그 밖의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 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임대인"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 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5조("임차인"의 금지행위)

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②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③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④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6조("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임차인"은 제2조에 따른 입주기간 내에 위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임차인"을 포함하여 위 주택에 입주한 자는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공공임대주택관리의 범위) 위 주택의 공동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사람이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임차인"이 관리한다.

제8조(보수의 한계) ① 위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차인"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와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3조에 따른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벽지·장판·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훼손·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임차인"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해야 한다.

제9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4.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6.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7.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8.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9.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임대인”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3.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4. "임대인"이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0조(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① "임차인"이 제9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통보(계약 해지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0일 이상 남은 경우에는 변경 후 계약 해지 예정일이 60일 이상 남는 범위에서 변경 통보 가능)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계약 해지 예정일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월 임대료 정산 완료일부터 계약 해지 예정일까지의 월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후속 임차인이 정해진 경우에는 월 임대료 정산 완료일부터 후속 임차인의 입주일 하루 전일까지의 월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제11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明渡)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임대인"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야 할 월 임대료, 관리비 등 모든 납부금액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3조에 따른 특약으로 정한 위약금, 주택 인도 지연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등 "임차인"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임차인"은 위 주택을 "임대인"에게 넘겨줄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지급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제시 또는 예치해야 한다.

제12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3조(특약) "임대인"과 "임차인"은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

입 주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입주년월일	년 월 일
퇴거예정일	년 월 일
해 지 사 유	

위와 같이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 본 신청서는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입주자 관리카드

<table>
<tr><td rowspan="6">계 약 자
(세대주)</td><td colspan="2">성 명</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생 년 월 일
(성 별)</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직 업</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연락처</td><td>자 택</td><td colspan="3"></td></tr>
<tr><td>휴 대 전 화</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7">가 족
사 항</td><td>관계</td><td>성 명</td><td>생년월일</td><td>직 장</td><td>비고</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입주기간</td><td colspan="5">년 월 일 ~ 년 월 일</td></tr>
<tr><td colspan="6"><특이사항></td></tr>
<tr><td colspan="6"></td></tr>
</table>

남해군 공고 제2021 - 1027호

『동천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동천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22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21. 8. 1. ~ 2022. 1. 31.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동천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042번지 외 12필지	하천정비 L= 291.2m 교량설치 1개소	남해군청/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2. 열람장소, 열람기간
   ○ 열람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열람기간 : 2021. 7. 22.~2021. 8. 5.(14일간)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1. 7. 22.~2021. 8. 5.(14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055-860-34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입용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편입)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내용	
1	남해	삼동	동천	1071-1	구	39	6	국	남해군				
2	남해	삼동	동천	1071	답	685	156	김O주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3	남해	삼동	동천	1072	답	2,053	130	최O배 외 1인	부산시 사하구 사하로				
4	남해	삼동	동천	1073	답	324	277	이O택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5	남해	삼동	동천	1075-1	답	1,326	321	강O수	경남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로				
6	남해	삼동	동천	1074-2	답	701	179	강O수	경남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로				
7	남해	삼동	동천	1074-1	답	661	150	강O수	경남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로				
8	남해	삼동	동천	2042	구	26,104	591	국	농림축산식품부				
9	남해	삼동	동천	975	답	886	119	박O미	부산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10	남해	삼동	동천	1051	답	1,129	330	최O민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	남해	삼동	동천	1054	답	879	40	김O식 외 1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12	남해	삼동	동천	1055	답	1,600	470	김O식 외 1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13	남해	삼동	동천	1056	답	1,430	321	최O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계						37,817	3,090						

(44) 제 697 호

남해군수 표

2021년 7월 26일

남해군 공고 제2021 - 1028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578호	어류등양식 (가두리)	어류	설천 월곡	20,000	2021.07.26 2031.07.25 (10년)	남해읍 화전로122번 가길 3-1	강경삼 외 5인(하동효, 이정자, 이군찬, 엄현호, 정주원)	

※ '21/22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 양식어업권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178호	어류등양식 (가두리)	어류	설천 월곡	20,000	2011.07.26 2021.07.25 (10년)	남해읍 화전로122번 가길 3-1	강경삼 외 5인(하동효, 이정자, 이군찬, 엄현호, 정주원)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578호

축 척 : 1/25,000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어류 등 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가두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월곡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마) N 34-55-44.74, E127-51-36.43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20,000 m²

	경 위 도 (WGS)			
	위 도	경 도	거 리	
가	34-55-40.963	127-51-06.896	가-나	100
나	34-55-39.614	127-51-10.479	나-다	200
다	34-55-33.712	127-51-07.202	다-라	100
라	34-55-35.062	127-51-03.620	라-가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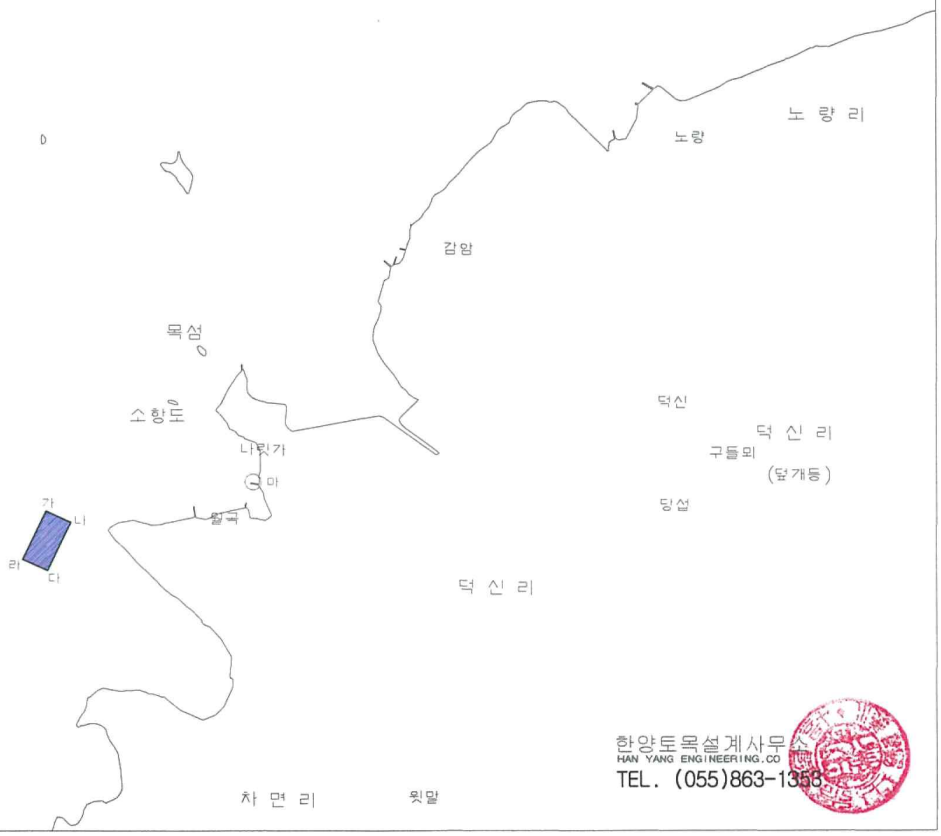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CO
TEL. (055)863-1358

남해군 공고 제2021-1037호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2. 제정이유

남해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1년 8월 11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30,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905, 팩스 055-860-3981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정책팀(전화 055-860-39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의 견 제출자	성 명(명 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와 어업경영체(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를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 며, 이를 남해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준수사항)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제시한 의 무 이행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 업무 담당 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어업인 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2. 위촉직 위원
가.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 및 지역사회단체의 관계자 4명 이내
다.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또는 시민단체 관계자 3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수당은 남해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단, 남해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그 밖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급신청 등)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원제외 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농어업인수당 최초 지급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